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
# 『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』

제 안설명자료



2022. 6. .

# 서울특별시교육청

#### 안녕하십니까?

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.

서울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·조언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 □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

○ 「성별영향평가법」제10조의2(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) 및 제13조의2(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.

### □ 관련 법규는

○ "시행 중인 조례·규칙,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"고 규정하고 있는 <u>「성별영향평가법」 제10조</u>와 "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설명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."고 규정하고 있는 <u>동법</u> 제13조입니다.

## □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

- 먼저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.
  - 시행 중인 조례·규칙,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합니다.
- 다음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.

- 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,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,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,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.
-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.
- 위원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.
- 당연직 위원은 정책·안전기획관, 예산담당관, 교육혁신과장,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,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,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합니다.

### □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

- 먼저 각 시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.
-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, 대구를 제외한 15개 교육청에서 조례 제정하여 시행중입니다.
-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입니다.
- 시민들의 높아진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고, 주요 정책 및 홍보물에서 성차별적 요소의 사전 점검 제거로 교육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공정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.
- □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